

#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2월 9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2. 20.)  
상정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심의함.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됨.(안

제3조제1항 및 제2항)

- 다. 위원은 공무원,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.(안 제3조제3항)
- 라.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- 마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.(안 제5조)
- 바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(안 제6조)
- 사. 시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,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의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아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됨.(안 제8조)
- 자.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- 차.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

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위원회 임기중에서 1회에 한해 연임 하면 전문성이 결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	○향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.
○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의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앞으로 오정구에 경찰서가 신축되면 경찰공무원 2명을 3명으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?	○위원회 구성 인원은 조정할 수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토록 하겠음.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덧붙임 :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73호
의결 년월일	2009. 2. 23. (제150회)

제안년월일 : 2009. 2. 20.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자 위원회 구성인중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, 향후 경찰서 신축에 대비하여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과장을 2명에서 각 1명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기능에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자함

## 2. 주요골자

-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기능 중에 의결사항 문구를 삽입시킴 (안 제2조)
-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 구성인중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.(안 제3조제3항제1호)
- 오정구에 경찰서 신축에 대비하여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과장을 2명에서 각1명으로 조정함(안 제3조제3항제2호)

#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조중 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”를 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”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제1호 “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자 1명”을 “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자 3명 “로하고 안 제3조제3항제2호 ”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과장 2명“ 을 ”관내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과장 각 1명“ 으로 수정한다

## 신· 구 조 문 대 비 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정   안
제1조 ~ 생략 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</u> 한다 제3조제①항 ~제③항 생략 1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자 <u>1</u> 명 2.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과장 <u>2</u> 명 제4조~ 제11조 생략	제1조 ~원안과 같음 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·의결</u> 한다 제3조제①항 ~제③항 생략 1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자 <u>3</u> 명 2.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과장 <u>각1</u> 명 제4조~ 제11조 원안과 같음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3.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
2.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과장 각 1명

3.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2명
4.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1명
5. 교통안전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

제4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의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
3.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,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·보존
3.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
4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

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및 전문가에

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